

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 평가 미 실시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국토교통부, 2014. 5. 2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5. 7. 10.)」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용역평가¹⁰⁹⁾는 계약금액이 2억 1천만 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¹¹⁰⁾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시공평가¹¹¹⁾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

109) 설계용역평가 :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국내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110)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111) 건설공사시공평가 :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 이상 진척 된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미실시(본청 ○○○○과)

가.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과는 “○○○○○○시장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주)○○○○○○○ 외 3개사와 948백만 원으로 계약하여 2013. 4. 10.부터 2014. 6. 30.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건설공사¹¹²⁾가 착공한 2015. 3. 9.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9. 8.까지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수욕장 일원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 외 1개사와 2014. 5. 20.부터 2015. 8. 14.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건설공사¹¹³⁾가 착공한 2016. 1. 27.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7. 26.까지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사업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공사기간)	설계용역평가		감사 시 지적
		법에 정한 규정 (착공후 6개월 이내)	실시여부	
○○○○○○○시장 분류식하수관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4.10~'14.6.30 ('15.3.9~'17.7.31)	'15.9.8까지 실시	<u>미실시</u>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83조 위반)
○○○·○○해수욕 장 일원 하수관로신설(확충)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5.20~'15.8.14 ('16.1.27~'18.7.14)	'16.7.26까지 실시	<u>미실시</u>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83조 위반)

※ 부산광역시 ○○○○국 ○○○○과 제출자료 재구성

112) ○○○○○○○○ 하수관거 공사 : 시공사 ○○○○(주) 외 1개사, 공사기간 2015.3.9.~2017.7.31., 금액 7,181백만 원

113) ○○○ ○○해수욕장 하수관거 공사 : 시공사 (주)○○○○○○○ 외 1개사, 공사기간 2015.3.9.~2017.7.31., 금액 10,022백만 원

나.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과는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 일원)] 전면 책임관리용역”을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929백만 원으로 계약하여 2010. 7. 7.부터 2015. 5. 31.까지 전면책임관리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인 2016. 2. 29.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역내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 전면책임관리용역”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와 1,445백만 원으로 계약하여 2010. 6. 8.부터 2015. 8. 26.까지 전면책임관리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인 2016. 2. 29.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사업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감사 시 지적
		법에 정한 규정 (준공 다음해 2월까지)	실시여부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 전면 책임관리용역	’10.7.7~’15.5.31	’16.2.29까지 실시	미실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83조 위반)
○○○○○구역내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 전면책임관리용역	’10.6.8~’15.8.26	’16.2.29까지 실시	미실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83조 위반)

※ 부산광역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및 건설공사시공평가 미실시(본청 ○○본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본부는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 ○○○○○일원2)]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주)○○○○○○○○ 외 1개사와 1,316백만원으로 계약하여 2010. 5. 24.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인 2015. 2. 28.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사업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공사기간)	설계용역평가		감사 시 지적
		법에 정한 규정 (준공 다음해 2월까지)	실시여부	
하수관거신설(확충) 공사 ○○처리구역 ○○○일원, ○○○일원2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10.5.24~'14.12.31	'15.2.28까지 실시	미실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83조 위반)

※ 부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건설공사시공평가 미실시

○○본부는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분구)]”를 ○○○○○○○(주) 외 1개사와 11,863백만 원으로 계약하여 2010. 6. 22.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준공된 다음해 2월말인 2015. 2. 28.까지 건설공사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건설공사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4】 건설공사시공평가 미실시 사업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공사기간)	건설공사시공평가		감사 시 지적
		법에 정한 규정 (준공 다음해 2월까지)	실시여부	
하수관거신설(확충) 공사[○○처리구역 (○○분구)]	'10.6.22~'14.12.31	'15.2.28까지 실시	미실시	시공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83조 위반)

※ 부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주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시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